

=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9 - - - -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5. 13

다. 상 정 일 자 :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08. 5.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노기섭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2007.12.21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6조의2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자치구 배분수익금
- 옥외광고물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 일반회계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
-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사항 (안 제6조)

- 구성인원 : 12명 이내 (공무원, 관련전문가 등)
- 심의사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제정안은

2007. 12.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6조의2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나. 적법성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는 의무적 명시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제정을 위임한 사항임.

다. 기금의 재원확보 문제는

- 본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고
- 최근 3년간 관련 수입을 보면 2005년 68백만원, 2006년 69백만원, 2007년 105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어 재원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물 관련 수입액 》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68,210	69,120	105,140
수수료	56,480	46,870	70,930
과태료	4,050	9,550	23,235
이행강제금	7,680	12,700	10,975

라. 기금의 사용용도는

-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우리구 다른 기금조례와는 달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